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.”



## 서울고등법원

수신자 임그루(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다세대주택 A동  
103호)

경유

제목 민원회신

1. 귀하게서 ‘국민신문고’로 제출하고 우리 법원에 이첩(2017. 2. 6. 접수번호 : 2BA-1702-037858호)되어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.

2. 먼저, 국민신문고는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,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,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, 이는 법원 업무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. 다만,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원의 사법행정사항과 관련한 민원은 우리 법원이 이첩 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귀하의 민원요지는, 귀하는 우리 법원 2016재누293호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, 2016재나905호[기타(금전)] 사건의 원고로서 원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심소송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내용으로 보입니다.

4. 위 민원요지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,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법관 외에는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주장서면 또는 탄원서 등의 문서는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.

5.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, 법무사, 대한법률구조공단 ([www.klac.or.kr](http://www.klac.or.kr) 전화 : 국번 없이 132) 등 유/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서울고등법원장



법원주사보

최영철

법원사무관

유승환

법원서기관

유하상

국장

전결  
02/13  
이용선

협조자

시행

총무과-1234

( 2017.02.13. )

접수

( )

우

/ "ht

전화

/전송

/ @scourt.go.kr

/ 공개